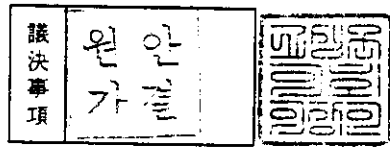


議案番號	第 285 號
議決年月日	1995. 5. 27. (第 33 號)



고성군사무의읍 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提出者	固城郡守
提出年月日	1995. 5. 19.

# 고성군사무의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95. 5. 19.

제 출 자 : 고성군수

의안 번호	285
----------	-----

## 1. 개정사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한 농지전용신고 업무를 행정지시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하고 있으나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 위임토록 되어있는바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농지전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저함.

## 2. 주요골자

- 가. 농지개발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토석의 채굴 및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호) 및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과 양어장등 간이 농어업용 시설로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로서(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호)3천300제곱미터이하의 농지 일시전용 허가에 관한 권한.
- 나.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66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이 경우 그 신고전용은 1회에 한하는 권한.
- 다.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이하의 농업용시설. 다만, 양축시설 및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은 3천300제곱미터(진흥지역밖 농지는 7천제곱미터)이하의 신고전용 권한.
-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그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천제곱미터이하의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집하장·장고 기타 농어민의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신고전용 권한.

마.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이하의 어업용 창고등 어업용시설. 다만, 양어장 및 양식장은 3천300제곱미터(진흥지역밖의 농지는 7천제곱미터)이하의 신고전용 권한.

바. 조합법인 또는 위탁영농회사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농기계보관시설·농산물건조시설·탈곡장시설·또는 농업용창고시설의 신고전용 권한.

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조합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당해 농어가조합원 또는 생산자단체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을 위하여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3천300제곱미터이하의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 57조)

### 고성군사무의음·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사무의음·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권한위임사무 연번중 77번·78·79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 번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 고
1번부터 76번까지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77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률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및 4호 규정에 의한 3년이내 의 기간동안 3천3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에 관한허가 .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일시 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 하는 경우 .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시설 이 아닌 간이농어업용시설 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 설의 설치불위하여 일시적 으론 농지의 형질을 변경 하는 경우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농림수산부 훈령 제 784호)	
7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1호내지 제6호의규정 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660제곱 미터이하의 농가주택으로 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 이 경우 그 신고전용은1 회에 한한다. .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천500 제곱미터이하의 농업용시 설. 다만, 양축시설 및 야 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은 3천300제곱미터(진흥지역 밖 농지는 7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 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그 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의 어린이놀이터·마 을회관·집하장·장고기 타 농어민의 공동생활의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농림수산부훈령 제78 4호)	

면 면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비 고
79	<p>면의 을 위한 시설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농어가 설치하는1천500          제곱미터이하의 어업용 장          고용 어업용시설. 다만, 양          어장 및 양식장은 3천300          제곱미터 (진흥지역밖의          농지는7천제곱미터)이하로          한다.</p> <p>조합법인 또는 위탁영농회          사가 설치하는1천500제곱          미터이하의 농기계보관시          설·탈곡장시설 또는 농업          용 장고시설</p> <p>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농어가·조합법인 또는 생          산자단체가 당해 농어가·          조합원 또는 생산자단체구          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을 위하여 진흥          지역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3천300제곱미터이하의 집          하장·선과장·판매장·장          고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          산물의 유통·가공시설</p> <p>해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          상수의 식재·재배신고</p> <p>농지에 농림수산물부령이 정          하는 다년생식물 또는 관          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자          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          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재배하거나          식재할수있다. 다만, 관상수          를 재배하거나 식재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농지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읍          면장에 신고하여야 한다</p>	<p>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농림수산물부령 제          784호)</p>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헌	행	개	정	안
[별표] 권한 위임 사무		[별표] 권한 위임 사무		
연번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1번 부터 76번 까지	( 생략 )	( 생략 )		
연번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1번부터 76번까지	( 생략 )	( 현행과 같음 )		
77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및 4호 규정에 의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천3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에 관한 허가 농지 개량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 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 하는 경우 건축 허가 및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농어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의 간이처리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 하는 경우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농림수산부 훈령 제 784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권한 위임 사무		[별표] 권한 위임 사유		
연번	위임사무명	근거및적용법률	비고	
연 번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비 고	
7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1호내지 제6호의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 농립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66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으로서 농립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 · 이 경우 그 신고전용은 회에 한한다. · 농립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이하의 농업용시설. 다만, 양축시설 및 마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은 3천300제곱미터(신흥지역 밖 농지는 7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그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농립수산부 훈령 제784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정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권한 위임 사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연번</th> <th style="width: 30%;">위임사무명</th> <th style="width: 30%;">근거 및 적용법률</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연번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권한 위임 사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연번</th> <th style="width: 30%;">위임사무명</th> <th style="width: 30%;">근거 및 적용법률</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의 어란어늘어터·바늘화관·침하장·장고기타 농어민의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                      농협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농어가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이하의 어업용 장고등 어업용시설. 다만, 양어장 및 양식장은 3천300제곱미터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7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조합법인 또는 위탁영농회사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이하의 농기계보관시설·탈곡장시설 또는 농업용 장고시설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연번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의 어란어늘어터·바늘화관·침하장·장고기타 농어민의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 농협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농어가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이하의 어업용 장고등 어업용시설. 다만, 양어장 및 양식장은 3천300제곱미터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7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조합법인 또는 위탁영농회사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이하의 농기계보관시설·탈곡장시설 또는 농업용 장고시설		
연번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연번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의 어란어늘어터·바늘화관·침하장·장고기타 농어민의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 농협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농어가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이하의 어업용 장고등 어업용시설. 다만, 양어장 및 양식장은 3천300제곱미터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7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조합법인 또는 위탁영농회사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이하의 농기계보관시설·탈곡장시설 또는 농업용 장고시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상				안			
[별표]								[별표]							
권한 위임 사무								권한 위임 사유							
연번	위임사무명	근거및적용법률	비고	연번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79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조합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당해 농어가·조합원 또는 생산자단체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 유통·가공을 위하여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3천300제곱미터이하의 신탄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 농어촌발전특별소시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농지의 식재·재배신탄하장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다년생식물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재배하거나 식재할 수 있다. 다만,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									